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 8. 16 선고 2022가단1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단체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7. 12.

판 결 선 고 2022. 8.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전남 해남군 C 답 1,739㎡에 관하여, D와 피고 사이에 2020. 12.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2020. 12.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접수 제2431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일자	대출기관	보증금액
1	2018. 6. 15.	F조합	425,000,000원
2	2018. 9. 14.	G은행	148,750,000원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소외 회사가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소외 회사는 대위변제금과 손해금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D는 위 표 순번1 기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1. 6. 16. F조합에 434,786,987원, 2021. 6. 30. G은행에 150,717,2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차321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1. 7. 26.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88,922,859원 및 그중 585,152,040원에 대하여 2021. 7. 19.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D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51,029,814원 및 그중 150,403,477원에 대하여 2021. 7. 19.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1. 10.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D는 2020. 12. 11. 피고와 전남 해남군 C 답 1,7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 12. 15. 접수 제2431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D의 적극 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7. 신용보증기금의 청구금액 115,175,000원의 가압류등기, 2021. 6. 4.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청구금액 10,200,000원의 가압류등기, 2021. 6. 8. H 주식회사의 청구금액 30,000,000원의 가압류등기, 2021. 6. 23. H 주식회사의 청구금액 90,000,000원의 가압류등기, 2021. 10. 21. I조합의 청구금액 28,541,998원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D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구분	순번	재산	가액
적극 재산	1	경북 청송군 J 임야 42,942㎡ 중 1/2 지분	7,257,198원 (공시지가 기준)
	2	전남 해남군 K 공장용지 2,668㎡	42,688,000원
	3	전남 해남군 C 답 1,739㎡	20,868,000원
		합 계	70,813,198원
소극 재산	1	F조합에 대한 채무	500,000,000원
	2	L은행 해남군지부에 대한 채무	133,300,000원
	3	L은행 해남군지부에 대한 채무	150,000,000원
	4	L은행 해남군지부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
	5	L은행 동천동지점에 대한 채무	39,600,000원
		합 계	922,9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이 성립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D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4, 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2021. 2. 19.부터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21. 3. 1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2021. 6. 16. 소외 회사의 F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실제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1. 선고 2017다237186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D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D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실질적으로 D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인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은 문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430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D가 무자력이었다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말미암아 D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D와 2020. 12. 1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2. 12. D가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되, 이자로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변제기를 2021. 8. 말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 12. 12.부터 2020. 12. 16.까지 합계 5,000만 원을 D에게 대여하였다.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압류, 압류 또는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가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약 6개월 전에 이루어졌다.

③ D는 피고에게 2021. 1.부터 2021. 9.까지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매달 100만 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D의 채무상태를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은 없다.

④ 피고가 D에게 실제 대여한 금액은 5,000만 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권최고액은 1억 원인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868,000원인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과도한 담보제공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달리 피고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D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준